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19.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이성자)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월 별 보험료 하한액 지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한 명칭 통일 (안 제2조, 제3조, 제6조)
- 지원 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금액(12,000원)’에서 ‘월 최저보험료’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일 규정(안 제3조)

- 지원 예산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 추가(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정옥)

-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금액(12,000원)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일 신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자구 등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으며, 최저보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음.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최저보험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8 호
----------	---------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한 명칭 통일(안 제2조, 제3조, 제6조)
- 나. 지원 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금액(12,000원)’에서 ‘월 최저보험료’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일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 예산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 추가(안 제7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2)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018-312호)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대상자”라 함은”을 ““지원대상자”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결정된”을 “결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험료”라 함은”을 ““보험료”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제3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을 “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제32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원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 중 “한다”를 “하며, 그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2. "급여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p> <p>3. "보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u>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0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u></p> <p>1. <u>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 65세</u></p>	<p>제2조(정의) ----- -----.</p> <p>1. -----<u>이란</u> ----- ----- ----- ----- -----.</p> <p>2. "<u>지원대상자</u>"란 ----- <u>따라</u> ----- ----- ----- <u>결정한</u> -----.</p> <p>3. "<u>보험료</u>"란 ----- ----- ----- -----.</p> <p>제3조(지원대상) ① <u>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u> ----- -----.</p> <p>1. <u>만</u> -----</p>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 5. (생략)

<신설>

제6조(지원시기) ① (생략)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지원예산)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 제32조-----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지원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원대상자-----

제7조(지원예산) -----

----- 하며, 그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